안전확인 시험 · 검사 진행절차_어린이용 온열팩

KATRI

절차	세부내용	비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1. 안전확인 신고용 ① 안전확인 시험·검사신청서(용도 : 안전확인신고용 or 재시험용) ② 제품설명서(컬러사진 포함) ③ 확인서 작성(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제조업자 확인서 - 재시험 확인서 · 재시험 진행시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안전확인 신고서 2. 추가시험용 ① 안전확인 시험·검사신청서(용도 : 추가시험용) ② 제품설명서 ③ 안전확인 신고서 사본(*신고확인증 번호 있음) ④ 확인서 작성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3. 안전확인 재신고용 **(*기존 안전확인신고를 진행했던 안전인증기관에서만 재신고 가능)** ① 안전확인 시험·검사신청서(용도 : 안전확인 재신고용 or 재시험용) ② 제품설명서(컬러사진 포함) ③ 확인서 작성(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제조업자 확인서 - 재시험 확인서 · 재시험 진행시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안전확인 신고서(*기존 신고확인증 번호 있음)**	- 붙임양식 참고 - 작성문의 : 인증사업팀 · **031-596-5787** **※안전확인신고서상 변경사유(신고인 정보 및 확인신고 내용)가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미진행한 경우, 재신고(기존 신고 번호 사용) 불가할 수 있음**
신청접수 (방문 및 택배)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8번길 19 KATRI시험연구원 3층 인증사업팀** · 031-596-5787	- 접수증 이메일 발송 (수수료, 완료예정일) - 수수료는 접수 후 납부
시험·검사·발급	① 완제품 20개 : 20일	- 시료 보완, 시험 항목 등에 따라 일정 조정
안전확인 신고접수	<제품검사 합격 후 진행> - **신고수수료(50,000) + 부본료(5,000) : 55,000원(VAT 별도)** - 발급기간 : **업무일 기준 +1일**	- 신고문의 : 인증운영팀 · 031-596-5698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	신고서 원본 우편발송(등기)	인수방법 선택

안전확인 시험·검사 신청서 (예시본)

신청일 : 20 . . .

접 수 번 호		KIKO -			세금계산서	수취회사명	㈜0000
신청자	회사명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대표자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사업자번호	123-45-67890
	주 소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담당자	신청 담당자	F A X	031)000-0000		E-mail	0000@katri.re.kr
	T E L	031)000-0000	H. P	010-0000-0000		연락처	031)000-0000
	E-mail	0000@katri.re.kr					

어린이제품명(기준)	어린이용 온열팩(부속서 15)	모 델 명	필수 기재사항
제조국명	필수 기재사항	제조업체명	-국 내제조의 경우:신청자와 제조업체명이 같아야함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제조업 필수) - 수입제품일 경우:영문 또는 한글로 기재
사용연령(필수 선택)	☐ 3세 미만 ☐ 3세 이상 ☐ 6세 이상 ■ 8세 이상 ☐ 기타 표시사용연령 ( )		
종 류 (필수 선택)	■ 분말형 ☐ 액체형 - 분말형인 경우, ☐ 붙일 수 없는 타입 ■ 붙이는 타입		
재 질(필수 선택)	섬유제(폴리에틸렌)		
성적서 (부본수)	■ 국문 (부) ☐ 영문 (부)		
용 도	■ 안전확인 신고용 ☐ 추가시험용 ☐ 재시험용 ☐ 안전확인 재신고용 ☐ 품질관리용		
성적서 인수방법	☐ 방문 ☐ 우편 ☐ 이메일 ■ 이메일 후 우편		
시료 처리	■ 폐기 ☐ 반환 (시험·검사 후 파괴된 제품) ※ 본 제품에 대하여 **시료처리에 "반환" 선택 시** 시료의 인수통보 후 1개월 내 제품 인수가 없을 경우 폐기처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험·검사항목	시료수	비고	시험·검사항목	시료수	비고

(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접수 시에는 별도로 시험·검사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① 시험·검사신청서 1부 ② 제품설명서(컬러사진 포함)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검사용 시료 20개
⑤ 안전확인 신고서 사본(추가시험용인 경우)

○ 시험 진행 중 추가로 관련 서류, 시료, 수수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접수증은 이메일로 송부해드립니다. 수수료는 의뢰신청 접수 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수료 미 입금 시 결과 안내 및 성적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확인 신고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에는 유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에는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 표시를 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모델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본 신청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포함)**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신청서입니다. 따라서 **기입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필수)

Katri 시험연구원

문의처 : 인증사업본부 인증사업팀
접수 : 031)596-5695
상담 : 031)596-5787

*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8번길 19 KATRI시험연구원 3층 인증사업팀

제 품 설 명 서[예시본] 어린이용 온열팩

□ 제품사진<필수기재>

정면(컬러 사진 및 완제품으로 첨부할 것)
<제품정면칼라사진> * 별도의 사진파일 제출 가능

□ 표시사항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표시할 내용) <필수기재>

품명	어린이용 온열팩	**모델명**	신청서와 동일
제조연월	**2024. 01. 01**	**제조국명**	신청서와 동일
제조자명	신청서와 동일	**사용연령**	신청서와 동일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	**지속시간 12시간** **최고온도 60 ℃**	**재질**	신청서와 동일
종류	■ 분말형 □ 액체형 - 분말형인 경우, □ 붙일 수 없는 타입 ■ 붙이는 타입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신청서와 동일		
주소 및 전화번호	**제품하자 및 리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문의처, 소비자 상담실 등**		
안전 표시(주의.경고 등) (별첨 참조)	**- 피부에 직접 붙이지 마십시오.** **- 같은 부위에 장시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너무 뜨겁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떼어 내십시오** **- 피부가 약한 분은 저온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 유아, 피부가 약한 어린이,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어린이,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경우 사용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사항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표시할 내용)

※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어린이용 온열팩」8. 표시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용 온열팩

*** 별 첨**

안전 표시	
일반사항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1.1 모델명 8.1.2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 8.1.3 제조연월 8.1.4 제조자명 8.1.5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6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8.1.7 제조국명(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 무역법에 의거 표기) 8.1.8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 설명서에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8.2.1 저온 화상의 주의 8.2.2 침구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온도보다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 8.2.3 영유아, 피부가 약한 어린이,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어린이,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사용에 관한 주의 8.2.4 영유아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않는다는 주의 8.2.5 붙이는 타임에서는 직접 살에 붙이지 않는다는 주의 8.3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제품 중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합이 0.1%를 초과한 제품에는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이라는 경고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안전확인 신고서 (예시본)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전화번호 031-000-0000
	주소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확인 신고 내용	어린이제품명 **어린이용 온열팩(부속서 15)**	품목분류번호(HS)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분말형(붙이는 타입), 섬유제(폴리에틸렌)	제조업체명 신청서와 동일
	제조국명 신청서와 동일	제조자 제시 모델명 신청서와 동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KATRI시험연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1부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신고확인증 번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효기간 : 년 월 일)

KATRI시험연구원장 직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확인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